

CATV제도 개선연구

정신교, 김우정

1. 서 언
2. 제외국의 CATV 제도
3. 현행 CATV 제도
4. 문제점 및 개선대책
5. 결 언

- 부 록
1. 유선방송 사업 관리지침
 2. 각종 신청서 양식
 3. 각종 수수료 요금표

1. 서 언

현재 우리나라 CATV 사업정책을 결정하는데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 국민윤리 및 도덕성, 공공성이 그 주체가 되고 있고 정부 또한 이 범위내에서 유선방송 육성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술추세에 따른 유선방송의 실시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과감한 신기술수용 정책과 국민원원에 따라 종합유선방송 실시도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유선방송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등 사회전반에 걸친 다방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는 방송용 매체만으로서가 아닌 다양한 정보의 제공기능과 더불어 통신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여야 하고 오락용 방송매체가 아닌 문화, 교육, 복지, 건강 및 지역행정등 각종 정보전달을 위한 가정용 종합정보 전달매체로서 성장·발전되어야만이 그 진가를 더욱더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CATV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종합유선방송 체제의 전환으로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민의가 충분히 반영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고 또 이러한 제도를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구성, 각종 제도를 입안 할때에는 전문 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토록하여 시대에 맞도록 정비하여 나아간다면 유선방송 시대의 화려한 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외국의 CATV 제도

•미 국

미국의 CATV는 1948년 오레곤주의 Astoria에 난 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시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업자들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스포츠, 가족대상 프로그램, 비디오, 스테레오음악, 어린이대상 프로그램, 의회중계, 정부기자회견, 영화, 코메디, 드라마, 다큐멘터리, 흑인대상 프로그램등이며, 사업운영제도는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시설운영자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인가는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시설

운영을 원하는 사업자로부터 시설의 건설, 채널편성, 운영계획등을 제출받아 지방의회와 Cable위원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검토, 심사후 적격업자에게 해당지역에서 10-15년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시설의 규제 및 감독은 연방정부 및 연방통신위원회 법규와 규칙에 의해서 행하여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법적 규제로서는 특허(허가)의 부여 및 특허(허가)료의 결정, 도시청방지법의 제정, 전주시용의 인가등이며 FCC가 주관하는 법적규제로서는 특허(허가)의 규제, 재송신의무, 경영의 기록과 보고의무, 소유자의 자격제한, 기술기준의 준수등이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와 FCC가 규제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점점 규제가 완화되거나 약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 일 본

일본의 CATV는 1955년 난시청 해소를 위한 재송신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비스내용은 재송신과, 자주방송, 쌍방향 서비스이며 시설에 따라 단일 서비스 및 종합적인 서비스를 행하고 있으나 거의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재송신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선방송 사업은 영리를 위한 민간사업자나 공공성을 위한 공익·공공단체등으로 크게 구분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방송시설이나 케이블의 설치는 단일 사업자나 단체에서 행하고 있다. 사업의 허가 및 신고는 우정성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인입단자수가 5백인 이하인 경우는 유선전기통신법을 적용 신고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5백인 이상의 경우는 유선TV방송법, 유선전기통신법등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유선방송사업에 관련된 법규 및 제도는 세계 및 금융면의 불합리, 공공시설물의 이용조건 엄격, 프로그램 공급체제등의 미비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어 현재 우정성을 중심으로 관련제도를 검토, 육성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영 국

초기에는 기존방송의 가치청지역 확대를 위한 소

극적 사업이었으며 82년 전국 주요도시를 케이블로 연결하는 "Wired Society"라는 계획으로 본격적인 CATV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스포츠, 영화, 음악, 어린이 프로그램 등이 주종을 이루고 종교적, 정치적 성향은 배제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 공급능력이 부족하고 광고방송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성이 어렵다.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무역산업성에서, 방송에 관련된 사항은 내무성에서 관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케이블 운영사업자에 관한 특허(허가)는 유선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케이블협회가 시설설치의 특허(면허)는 전기통신법에 의해 무역산업성에서 교부하고 있다.

케이블 제공사업의 유효기간은 시스템의 형태에 따라 23년(Star 형태), 15년(tree 형태)이고 8년마다 갱신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분야에 따라서는 민간인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나 재정원조, 세제상의 혜택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는 25채널 이상의 쌍방향 CATV활성화를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네트워크 수단으로는 광섬유의 이용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자금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서 독

서독의 CATV도 타 유럽과 마찬가지로 기존 무선방송의 공동수신이나 재송신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주방송은 공공방송의 반발로 전무한 상황이다. 서비스로는 영국의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서비스, 오락·영화, 보건, 환경보호, 성인교육, 믹스채널(여러프로 제공자가 보내는 프로그램) 음악채널 등이다. 케이블의 설치 및 소유는 우전성에서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방송권, CATV사업의 허가는 주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광고방송을 재원으로 하는 민영방송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 데이터의 보호가 엄격하고 프로그램 내용중 폭력, 공포, 섹스장면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다. 정책적으로는 광대역의 집중화 광섬유를 도시형 CATV로 전개해가는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 프랑스

프랑스의 CATV보급은 국영방송사업체 방송프로

의 공동수신 내지 재송신 및 국경지역의 외국 방송 채널 수신을 위한 것으로 전국을 스타형 다목적 광섬유 케이블망에 접속, 전화, 위성방송, TV회의, 팩시밀리 비디오텍스등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사

업운영제도는 우전성에서 CATV망의 건설 보수자금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체는 일부체원의 부담과 지방 상업운영 회사에 CATV 사업면허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표2 주요 외국의 CATV 사업동향

구 분		미 국	일 본	영 국	서 독	프 랑 스
주 관 기 관		F C C	우정성	케이블 협회	우전성	우전성
사업운영 제 도	허 가	지방자치단체	우정성	케이블 협회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단체
	형 태	민 간	민 간	민 간	케이블 : 우전 성 시스템 : 민간	케이블 : 우전 성 시스템 : 민간
정 책 방 향		규제완화	쌍방향 기능강조	쌍방향 서비스	뉴미디어의 민간개방	뉴미디어 민간개방
시 장 구 조		규제하 경쟁	규제하 경쟁	규제하 규정	정부 독점	규제하 경쟁
보급율 (대 TV %)		41.1	14.6	14.0	21.3	
서비스 내용		Basic 서비스 Pay 서비스 쌍방향 서비스	난시청 대책 쌍방향실험중	기존방송의무 재송신 의무	재송신 위주 쌍방향실험중	모든 종류의 영상통신 서비스의 제공 위성방송, TV 회의, FAX, 비디오텍스, 전화
요 금	설치비	30 - 40 \$	2 - 3 만엔		설치비 : 129\$ 가입비 : 80\$	1 만 - 1 만 5 천프랑
	사용료	기본료 : 8-10\$ ch당 : 12\$ 추가	300 - 500 엔	10 - 16 \$	2 \$	

3. 현행 CATV 제도

현행제도는 유선방송관리법 및 부수법령에 의거 운영·관리되고 있다. 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과정은 신청인이 허가신청서를 작성 문화공보부에 접수하면 문화공보부는 관계서류를 검토하게 되며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체신부로 이관한다.

체신부는 문화공보부의 요청에 따라 유선방송시설 계획을 국가 통신조정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를 거친후 그 결과를 문화공보부에 통보토록되어 있다. 체신부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문화공보부는 자체 시험결과를 수합 신청인에게 허가의 가부를 통보하

게 된다. 다시 말하면 문화공보부는 주관부처로서 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사업의 감독, 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체신부는 허가결정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사항에 대하여 각 직할관서 및 전기통신공사에 검사·심사·감독등의 업무를 위임 및 위탁하여 대행토록 하고 있다. 서비스내용은 기존방송의 중계방송과 일정구역내에서만 행할수 있는 자가 유선방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방송시간은 1일 1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되어 있다. 정책적으로는 광대역 집중화 광섬유케이블을 이용한 도시형 CATV로 전개하는 종합유선방송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중에 있다.

표1 문화공보부와 체신부의 업무분담

항 목	문 화 공 보 부	체 신 부
유선방송사업허가	○ 허가신청접수 ○ 사업의 타당성여부 심사 — 시설계획의 타당성 — 재정적 기초 구비여부 — 사업의 지연적·사회적 필요성 여부 ○ 임시허가 ○ 허 가	○ 시설계획의 타당성 심사합의 ○ 준공신고 접수 ○ 준공검사 ○ 준공검사 결과통보 → 문화공보부
사업의 감독	○ 이용약관의 승인 ○ 유선방송 실시결과 보고접수 ○ 사업에 관한 사항 검사 및 시정명령	○ 시설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검사 (준공검사, 정기검사, 시설변경 검사, 임시검사) ○ 시설의 보수, 개수, 이전명령
수 수 료	○ 허가, 변경허가, 재허가 및 준공검사 수수료 결정	○ 준공검사 수수료에 관한 합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시·도지사에게 위임	○ 체신청장에게 위임 ○ 전송 및 선로설비에 관한 검사 는 통신공사에 위탁

4. 문제점 및 개선대책

• 통신공사의 통신설비 사용

유선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신공사의 통신설비를 이용(유선방송 관리법 제20조)하게 되어 있으나 통신공사에서는 특별히 유선방송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코자 하는 시설사업자가 있더라도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인바 통신공사로 하여금 이에 대한 시설투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설비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법령대로 자가 선로를 설치하여 유선방송을 행하고 있는 무허가 사업자의 선로설비를 철거케 하고 통신공사 선로설비의 이용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대역선로설비의 사용료등의 문제로 영세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또 이를 강제 시행할 경우에는 집단민원의 야기가 우려되므로 국가통신조정위원회에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송 및 선로설비의 시험·검사품 사용의무

신규사업자는 전송 및 선로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시험·검사품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상당수의 제품에 대한 표준규격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송 및 선로설비의 시험·검사품 사용규제는 다소 빠르다는 여론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우선은 관련업체 및 전문인들의 폭넓은 지식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 미제정된 표준규격서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유선방송관리법 개정전에 설치된 기시설에 대한 시험검사품의 사용 의무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시설을 일시에 대체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시험검사품 사용의무를 일정기간동안 유보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대체를 유도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통신공사 전주의 사용

통신공사 이용약관에는 유선방송용 선로가설을

위한 전주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시설검사시 통신공사 전주에 가설된 선로를 불법시설로 인정 철거할 경우에는 통신공사와 유선방송사업자간에 상당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통신공사측에서 전주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공중통신설비의 보전상 지장이 막대하므로 전주대여는 곤란하다는 의견이고 유선방송사업자는 전주이용을 제한할 경우 유선방송 선로가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때문에 사실상 유선방송사업이 불가능 하므로 전주사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대한 대책으로서는 통신공사 이용약관을 개정 및 보완하여 전주사용을 허용하되 전주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통신공사와 유선방송사업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토록 유도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됨.

• 종사자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종사자의 자격은 2급이상의 유선 또는 무선설비 기사로 되어있고 1990년 6월 30일 까지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방송 시설의 설치 및 기술관리 능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나 영세가입자 즉 500가입자 미만의 사업자가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기에는 재정상 고충이 크므로 현행법 준수여부가 의문스러운바 가입자수에 따라 자격자와 유경력자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 즉 자격자채용 경감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국가통신 조정위원회의 심의

신규사업자가 설치하는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의 전송 및 선로설비는 체신부가 국가통신조정위원회의 심의회의에 상정하고 있으나 그 허가신청자가 새로운 전송 및 선로설비를 가설할때는 신청자가 직접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실정임. 그러므로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체신부가 이를 일괄적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주므로써 허가신청자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수수료의 책정

·현행 검사수수료는 준공검사 및 시설변경검사에 대한 수수료만 규정되어 있고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지않는 상태이므로 관계법개정시에는 상기 수수료에 관한 규정의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준공 및 시설변경 검사 수수료 배분

·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자가 납부하는 검사수수료에는 체신부의 방송국설비 검사수수료와 통신공사의 전송 및 선로설비 검사수수료가 합산되어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배분이 복잡 다단하므로 체신부에서 방송국 설비와 전송 및 선로설비 검사를 종합 실시하므로서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의 배분문제도 자연해소 될 것으로 사료됨.

·검사요원의 확보

지속적인 증가상태에 있는 유선방송사업자의 설비검사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는 담당 검사요원의 증원이 불가피 하므로 검사요원 증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행정업무의 일원화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CATV 사업은 체신부와 문화공보부의 관련법규에 의해서 운영·관리되고 있어 유선방송사업을 위한 허가 즉 허가신청부터 허가과정까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또 유선방송사업에 필요한 각종 검사업무도 체신부와 전기통신공사가 각각 분담하고 있어 이를 수감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바 상기 허가 및 검사업무를 동일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결론

유선방송은 첨단 정보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는 현행제도의 운영방법과 관련법규의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한 형편이다.

선진국에 비하여 국내의 사업운영 제도는 단일 민간사업자에 의해 케이블 건설이나 방송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수준도 소규모 재송신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의 제반문제점과 선진국의 정책동향을 고려, 새로운 제도를 입안 할때에는 시스템 및 케이블 운영사업자, 프로그램 공급자를 각각 분리시켜서 가입자 측면에서는 채산성이 없는 지역의 케이블 가설 회피등의 불이익을 배제하여야 하고 사업자 측면에서는 케이블의 건설과 운영 및 서어비스 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막대한 재원투자 부담을 경감 시켜줄 수 있도록 배려,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유선방송에 관한 법률은 유선방송 도입 및 운영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측면과 광고주나 가입자 확보 및 증대를 기 할 수 있는 사업적 측면등 CATV의 발전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과 미래 지향적인 육성정책을 펴서 민간인의 투자욕구를 최대한으로 유도하고 유선방송을 단순히 무허가 업체에 대한 규제측면에서가 아닌 미래에 대비하는 측면에서의 정책결정을 도모하여 유선방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의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부 록

- 가. 유선방송 사업 관리지침
- 나. 각종 신청서 양식
- 다. 각종 수수료 요금표

4. 유선방송시설의 검사

가. 검사의 종류

종 류	시 기	관 련 근 거	결 과
준 공 검 사	준공신고시	법제 8 조, 영제 7 조 기술기준 제 13 조	문공부에 통보
정 기 검 사	체신청장이 정함 (연 1 회)	영제 7 조	문공부에 통보
시설변경검사	시설변경신고시	법제 11 조, 영제 7 조 기술기준 제 13 조	문공부에 통보
임 시 검 사	○ 체신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 문공부장관 요청시	영제 7 조 영제 17 조	문공부에 통보

나. 준공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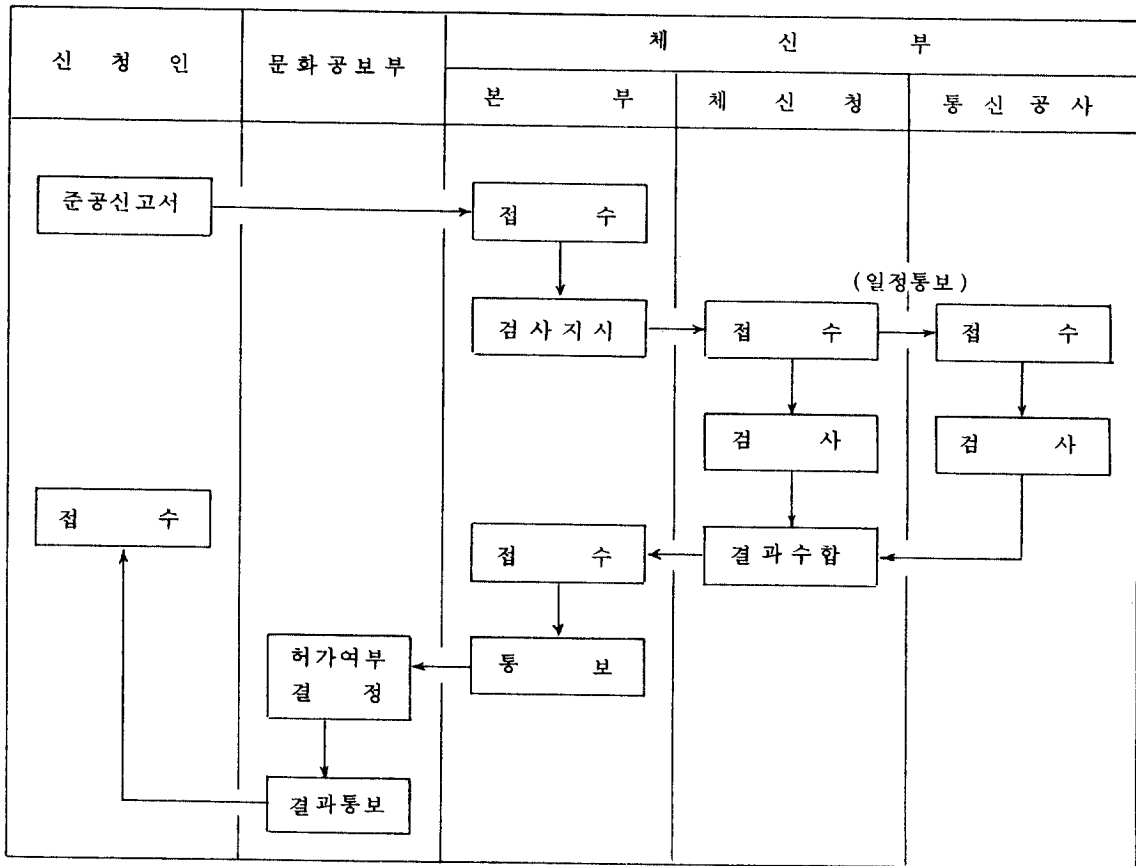
1) 검사기관의 임무

- 체신청
 - 신고서 접수 및 검사
 - 검사결과 접수 및 합격여부 판단
 - 검사결과 문공부에 통보
- 체신청(전파국(과))
 - 통신공사(지사)에 전송 및 선로설비에 대한 준공검사 일정통보
- *통신공사의 전송 및 선로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유선방송국설비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전송 및 선로설비에 대한 통신공사(지사)의 검사결과 접수
- 검사결과를 체신부장관에게 보고
- 통신공사(지사)
 - 체신청장이 지정한 일자에 전송 및 선로설비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결과를 체신청에 통보

2) 업무처리 절차



*준공검사기간 : 준공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잠정결정

*'88.7.1이후에는 체신청에서 준공신고서를 직

접 접수하고, 그 검사결과를 문화공보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에 통보

3) 준공검사서 접수

가) 준공신고서 제출서류

- 유선방송시설 준공신고서
- 허가증사본(임시허가증사본을 말함. 다만, 종전의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았던 사업자는 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증사본을 제출)
-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 시설보유 현황
- 유선방송시설의 설치도면
- 국가통신조정위원회의 심의서(조정위

원회 심의대상 시설에 한함)

나) 확인사항

- 구비서류 확인
- 준공검사수수료 납입여부 확인
—수수료는 체신부장관명의로 체신공금 계좌에 납입하고, 납입영수증을 준공검사신청서 뒷면에 첨부

4) 준공검사 실시

가) 준공검사 일정 및 절차

- 준공검사일정은 체신청장이 정하여 통신공사(지사)에 통보

- 통신공사(지사)는 체신청장이 정하는 일자에 준공검사 실시
- 기타 준공검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가능한 한 구두협의를 의할 것.

나) 준공검사 항목

- 유선방송국 설비(체신청에서 검사)
 - 유선방송시설의 보유기준(고시 제88호)
- 시설보유현황을 대조확인
 - 전송상태 시청장치의 설치(유선방송기술기준 제 5 조)
 - 예비전원설비(유선방송기술기준 제 6 조)
 - 수신공중선(유선방송기술기준 제 7 조, 무선설비규칙 제25조)
 - 유선방송질적수준(유선방송기술기준 제 8 조, 부칙 4 항, 고시 제89호, 무선설비규칙 제39호, 40조, 42조, 제46조, 48조—50조)
 - 방송채널(유선방송기술기준 제 9 조)
 - 누설전파의 한도(유선방송기술기준 제 11조)
 -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유선방송기술기준 제17조, 부칙 제 5 항, 고시 제92호)
- 전송 및 선로설비(통신공사에서 검사)
 - 선로(인입선제외) 설치상태를 설치도면과 현장대조

— 시험검사품 사용여부(유선방송기술기준 제 4 조)

— 누설전파의 한도(유선방송기술기준 제11조)

• 수상상태 포함

— 전송 및 선로설비 설치기준(유선방송기술기준 제12조)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제23조 —제31조

— 유선방송시설의 설치·운용상태(유선방송기술기준 제17조)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제 7 조

다) 준공검사요령

- 부록2 “준공검사서”에 의해 유선방송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의 적합여부 검사

다. 정기검사

1) 검사기관 및 검사시기

• 검사기관

— 체신청 전파국(과) : 유선방송국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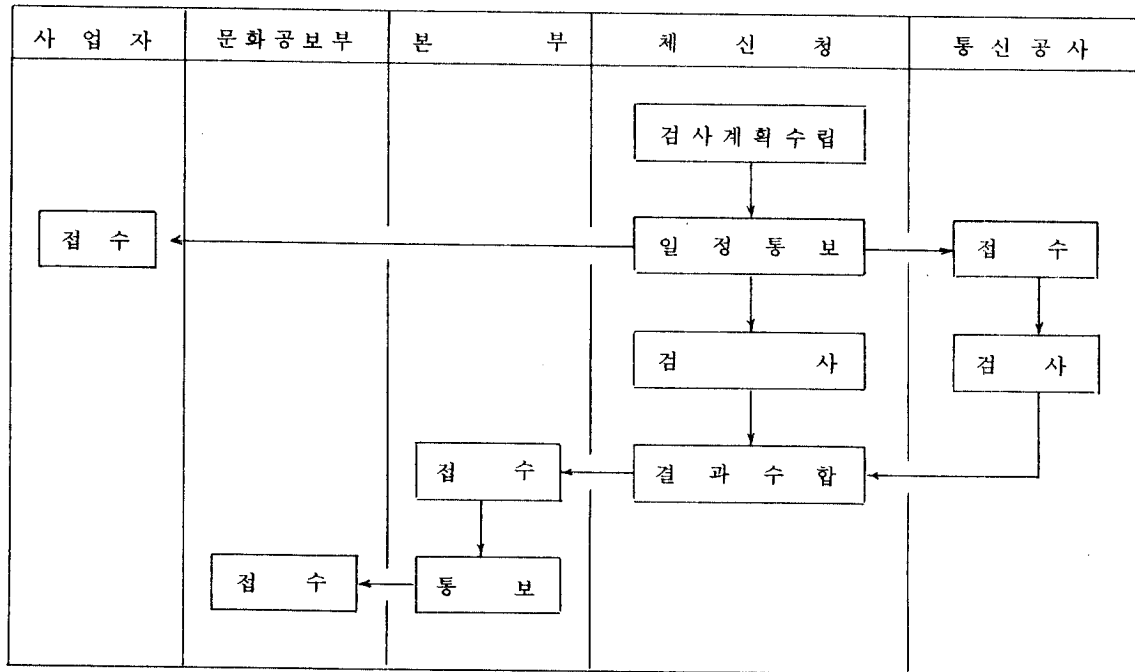
— 통신공사(지사) : 전송 및 선로설비

- 검사시기 : 연1회 실시하되 그 해에 준공검사 또는 시설변경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2) 검사대상

- 허가를 받아 행하는 모든 유선방송사업의 시설

3) 업무처리절차



4) 검사계획의 수립

- 체신청에서 연간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검사 30일전에 통신공사(지사) 및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5) 정기검사 실시

- “준공검사실시 요령”에 의해 실시
- 통신공사(지사)는 특히 전송 및 선로설비에 대하여 허가된사항과 일치한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

6) 검사결과 보고 및 통보

- 체신청장은 익월 10일까지 검사실시결과를 체신부장관에게 보고
- 체신부장관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통보

라. 시설변경검사

- 준공검사 요령과 동일하게 실시함

마. 임시검사

1) 검사기관 및 검사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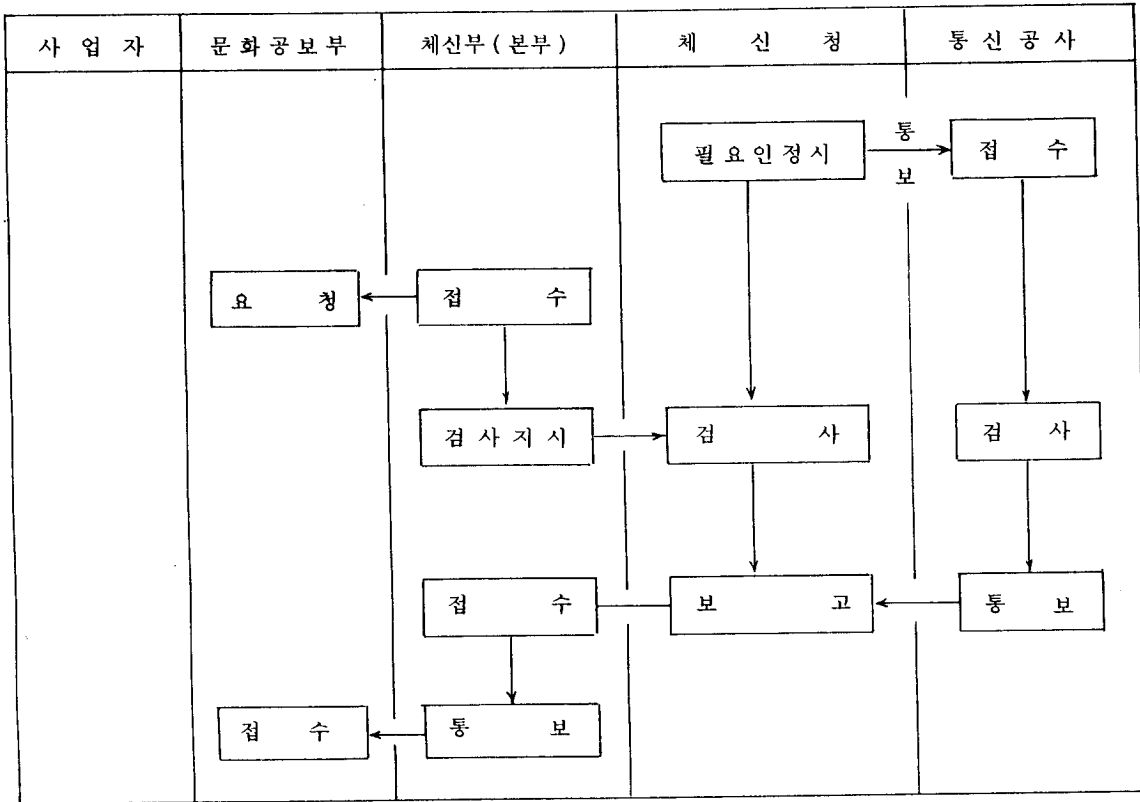
- 검사기관

- 체신청 전파국(과) : 유선방송국설비
- 통신공사(지사) : 전송 및 선로설비

- 검사시기

- 체신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문화공보부장관이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 검사하는 경우 유선방송시설에 대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

2) 업무처리 절차



3) 임시검사 실시

- 준공검사요령과 동일하게 실시함

5. 보수, 개수, 이전 및 시정명령

가. 시정명령시기

- 유선방송시설에 대한 검사실시중 시설에 하자가 발견된 때
 - 준공검사 : 임시허가사항과 상위할 때
 -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 허가사항과 상위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시설을 증설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
 - 시설변경검사 : 변경허가사항과 상위할 때
- 기타 다른 통신과의 혼신방지등을 위하여 체신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시정명령에 대한 법적내용

- 1) 전기통신기본법 제18조 제 1 항 및 제 2 항
체신부장관은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타인에게 장애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개조·수리 기타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유선방송관리법 제6조 제2항

체신부장관은 유선방송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음.

3)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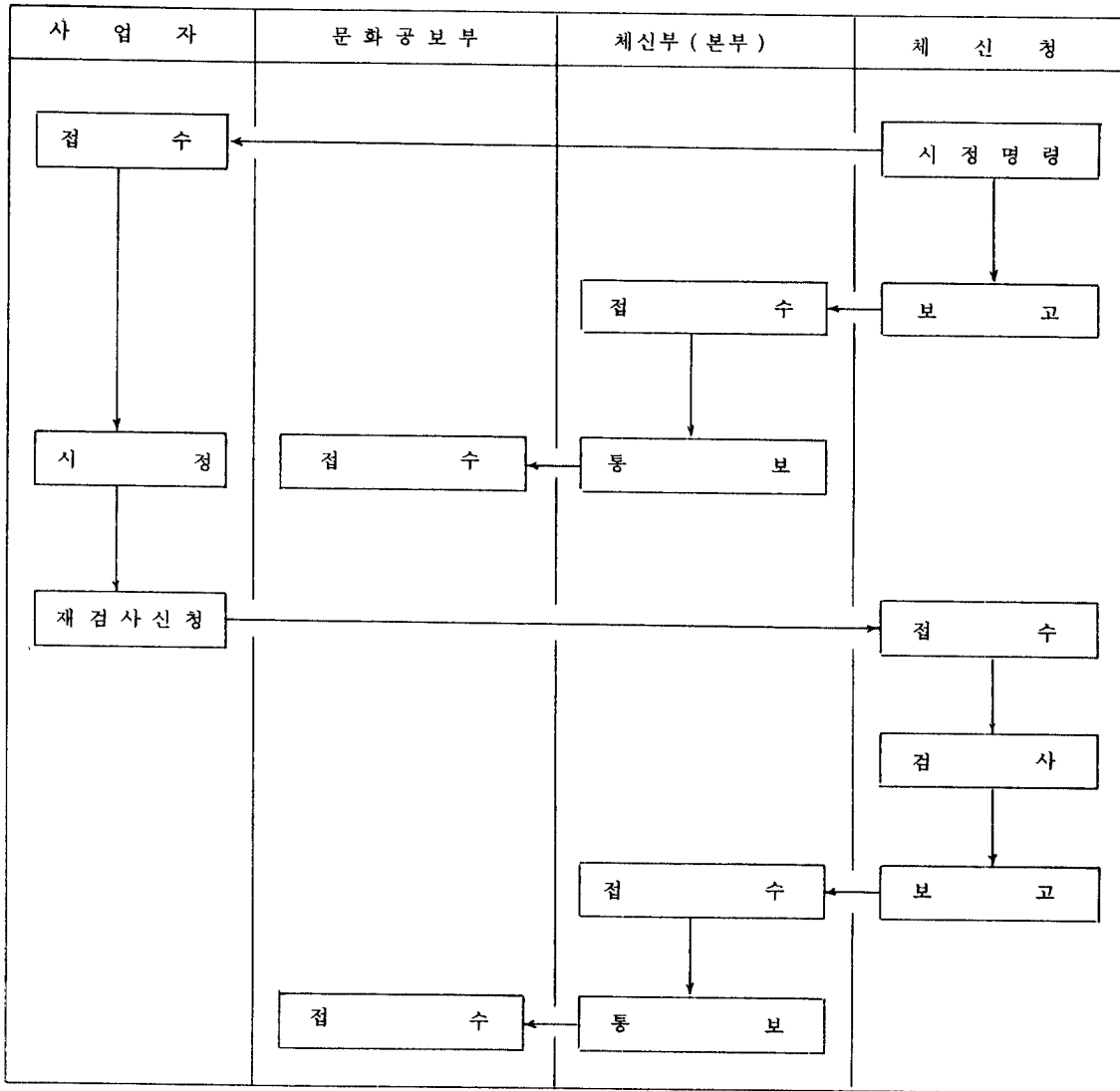
체신부장관은 준공검사의 결과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후 재검사를 받게 할 수 있음.

다. 시정명령 기관

- 체신청장

- 유선방송시설의 검사업무와의 일원화를 위해 체신청장에게 대행토록 함.

라. 업무처리 절차



마. 시정명령 및 재검사

1) 시정명령

- 체신청 검사담당공무원이 검사현장에서 일 정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
- 검사시 전송 및 선로설비에 하자가 있을 때 에는 통신공사 검사 담당직원이 체신청 검 사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체신청 담당 공무원이 시정하도록 명령

2) 재검사

- 체신청장은 시정명령사항에 대하여는 재검 사신청을 받아 반드시 시정여부를 확인
 - 검사시 전송 및 선로설비에 하자가 있어 시정 하도록 명령한 사항에 대한 재검사는 체신 청장이 통신공사(지사)에 재검사 의뢰
- 바. 시정명령위반시 벌칙(법 제22조 제 2 항)
- 허가취소
 - 6월이내의 사업정지
 -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6. 준공검사 수수료등의 결정

처

가. 결정기관

·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 문화공보부장관이 체신부장관의 합의를 거

나. 수수료 내역

1) 준공검사 수수료

종 류	중 계 유 선 방 송		음악유선방송	자가유선방송
	T V 중 계	라디오중계		
금 액 (원)	70,000	50,000	50,000	20,000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의 준공검사
수수료금액은 인입단자 1,000개를 기준으
로 하되, 1,000개 추가시마다 25,000원을
추가한다.

2) 시설변경검사 수수료

· 중설인입단자 1,000개마다 25,000원

다. 각종 수수료 요금표

(제19조 관련)

구	분	금 액 (원)
1. 법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		10,000
2. 법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신청		5,000
3.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의 준공검사 신고		7,000
가. 중계유선방송		(다만, 라디오 방송중계의 경우에는 50,000 원)
나. 음악유선방송		50,000
다. 자가유선방송		20,000
4. 법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의 변경허가신청		5,000
5. 법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증설을 수반하는 시설 변경검사신고 (증설인입단자 1,000 개를 기준으로 한다)		25,000

비고 : 위표 제 3 호중 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의 준공 검사수수료 금액은 인입단자

1,000개를 기준으로 하되, 인입단자 1,000개 추가시마다 25,000원을 추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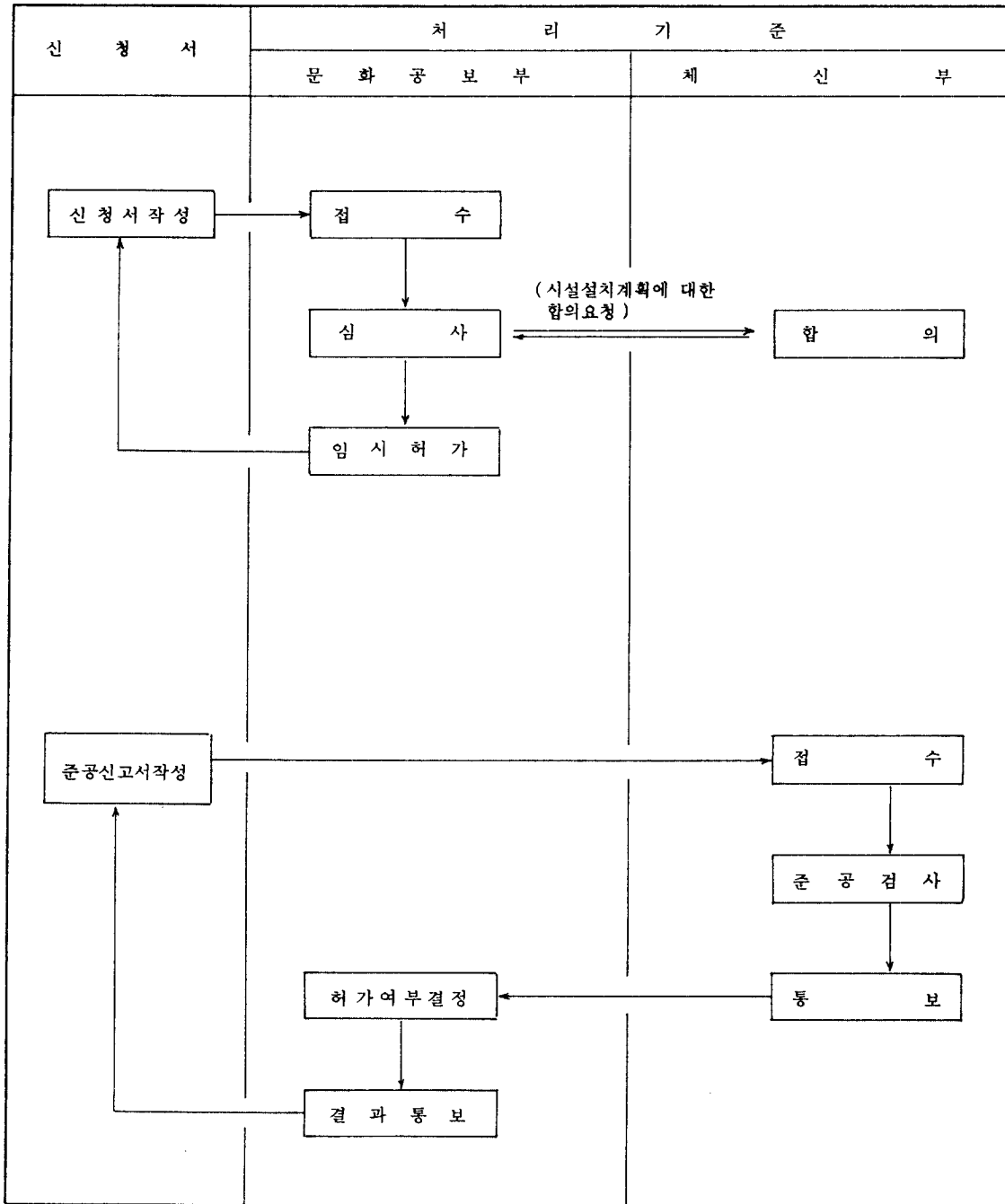
참고문헌

1. 유선방송사업관리지침서
2. 컴퓨터비전
3. CATV기술
4. CATV공급전략과 ISDN의 실현 연구보고서
5. CATV비즈니스 전략
6. 뉴미디어 기술시리즈 CATV
7. 유선방송 수용형태 조사 및 내용분석 결과 보고서
8. 유선방송의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앞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유 선 방 송 사 업 계 획 서				
① 사업의 종류				
② 송 신 내 용				
③ 사 업 구 역 등	사 업 구 역	사업구역내가구수	예상가입 가구수	비 고
④ 사용할 채널 및 주파수	채 널	주 파 수	사 용 내 역	비 고
⑤ 운 용 시 간	오전	시	분 -	시 분
	오후	시	분 -	시 분
				⑥ 1일평균 운용 시간
				시간
⑦ 시설준공 예정일				

⑧ 시설자금 및 공사비 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시 설 자 금	자	기 자 본				
	설	비 분 담 금				
	차	입 금				
	기	타				
		계				
공 사 비		토 지 구 입 (임 대) 비				
		건 물 구 입 (임 대) 비				
	자	재 구 입 비				
	공	사 비				
	기	타				
		계				
⑨ 사업수지간격						
구		분	제 1 차 년 도 (-)	제 2 차 년 도 (-)	제 3 차 년 도 (-)	비 고
수 입		시설분담금 (가입비)				
		사 용 료				
		기 타				
		계				
지 출		관 리 비				
		인 건 비				
	자	재 구 입 비				
	공	사 비				
	기	타				
		계				

⑩ 유선방송시설설치계획							
㉓ 시설구역 등							
시 설 구 역		설치완료예정일	간선의 전장	중계증폭기	인 입 단 자 수	비 고	
전 역			m	대			
구간별			m	대			
			m	대			
			m	대			
㉔ 주된 설비의 설치장소							
구 분			설 치 장 소				
수신공중선 (중계유선방송)							
주전송장치							
주된 연주소							
중계증폭기							
간 선							
㉕ 사용주파수							
사 용 주 파 수		용 도		동시사용가능 주파수의 수			
				주파수 배열도			
㉖ 시설개요							
수신 공중 선계	구 분	형식및구성	주파수또는 주파수범위	상 대 이 득	지상높이	수 량	
	수 신 공 중 선			최고 최저	m		
	급 전 선	선로종류	전 장	손 실		비 고	
			m	최고 최저	dB (MH z) dB (MH z)		

35352-00232 일
1987. 6.30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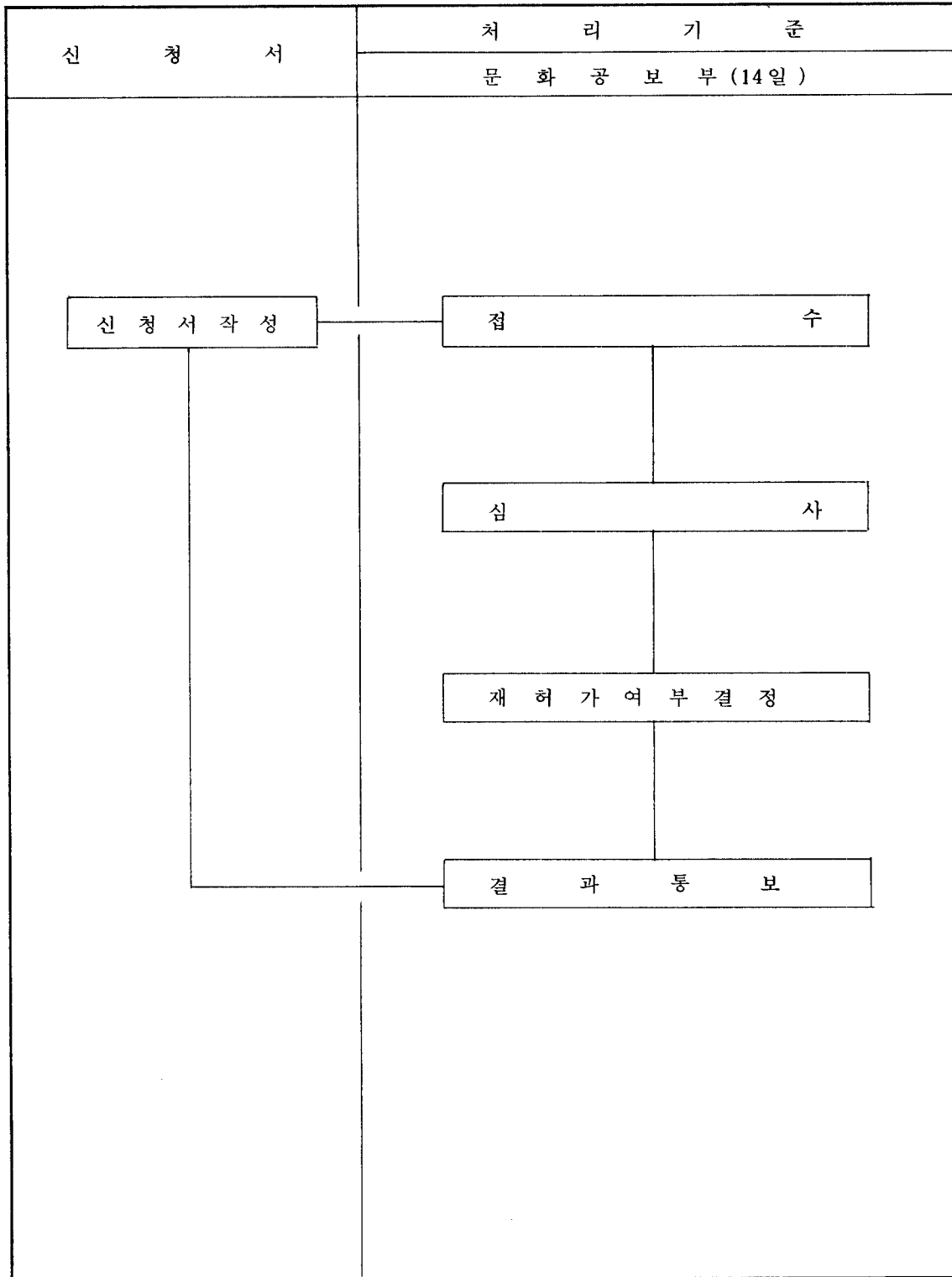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g/m²)

주 전 송 장 치	구 분	형식 (명칭)	증폭하는주파수		이득	잡음지수	레벨조정범위	제조사
	전 치 증폭기		MHz		dB	dB		
	수 신 증폭기							
	주파수 변환기	형식 (명칭)	입 력 주 파 수		출력주파수	이 득	제 조 자	
						dB		
	변조기	형식 (명칭)	입력신호의 종류		변 조 방 식	출 력 주 파 수	제 조 자	
	연락선	구분 (가공 또는 지하)	선로종류	전 장	손 실	제 조 자	비 고	
				m	dB/m			
	기 타 기 기	종 류	형 식 (명칭)		제 조 자		비 고	
자 체 방 송 장 비	종 류	형 식 (명칭)	대 수		제 소 자		비 고	
중 계 증 폭 기	종 류	형식 (명칭)	증폭 가능 주파수범위	정격출력 레 벨	동시 증폭가 능주파수의수	증폭주파수	제조사	
			MHz 부터 MHz 까지	dB		MHz		

분기기 및 분배기	종 류	형식 (명 칭)	분파기결합손실및 분 배 손 실		삽입손실	단자간결합 손 실	대 수	제조사
			dB		최대 dB	dB	대	
분파기	종 류	형식 (명 칭)	분파한 주파수		분파손실	단자간결합 손 실	대 수	제조사
			MHz		dB	최 소 dB	대	
			MHz		dB			
전 원 공 급 기	형식 (명 칭)		교류및직류구분		용 량	출력전압	제 조 자	비 고
보 안 장 치	형식 (명 칭)		제 조 자			비 고		
기 타 장 치	종 류	형 식 (명 칭)			제 조 자		비 고	
선 로	구 분	가공또는 지 하	선 종	전 장	손 실		제 조 자	
	간 선				최고 dB/m(MHz) 최저 dB/m(MHz)			
	분 배 선							
	인 입 선							
전 주	종 류	자가수	통신수	한전주	기 타		비 고	
	목 주							
	콩크리트주							
	철 주							
	기 타							
	계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 4 호서식]

유 선 방 송 사 업 운 영 실 적 서															
① 상 호 (명 칭)						② 전 화 번 호									
③ 성 명 (대표자)						④ 주민 등록 번 호									
⑤ 사 업 의 종 류						⑥ 허가번호						⑦ 허가일자			
⑧ 소 재 지 (주된 사무소)						⑨ 송신내용						⑩ 사업구역			
사기 간 업등	⑪ 업 기 간		. . . - . . .												
	⑫ 휴 업 기 간		. . . - . . .												
⑬ 가 현 자 황	년 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송 신 실 적	⑭ 송신시간		총 송 신 시 간			1 일 평 균 송 신 시 간			비 고						
			시 간			시 간									
	⑮ 주요송신 내 용														
	⑯ 자 체 제작 · 송신		총 제작건수			총 송 신 건 수			비 고						
년 월 일 작성자 ⑰															

35352-00411 일
1987.6.30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g/m²)

제 호

유 선 방 송 사 업 임 시 허 가 장

상 호 (명 칭)

사업자 성명 (대표자)

유선방송사업의 종류

사업 (송 신) 내 용

사 업 구 역

준 공 기 한

종사자의 자격과정원

사 용 할 채 널

운 용 허 용 시 간

유선방송관리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선방송의 임시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문화공보부장관
서울특별 시장
직 할 시 장
도 지 사]

35352-00511 일
1987.6.30 승인

190 mm × 268 mm
(인쇄 용지 (특급) 120g/m²)

제 호

() 유 선 방 송 사 업 임 시 허 가 장

상 호 (명 칭)

사업자 성명 (대표자)

사 무 소 소 재 지

유선방송사업의 종 류

사 업 (송 신) 내 용

사 업 의 구 역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사 용 할 채 널

운 용 허 용 시 간

허 가 의 유효 기 간

부 관 사 항

유선방송관리법 제 10 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선방송사업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문화공보부장관
서울특별시
직할시장
도지사]

35352-00611 일
1987.6.30 승인

190 mm × 268 mm
(인쇄용지 (특급) 12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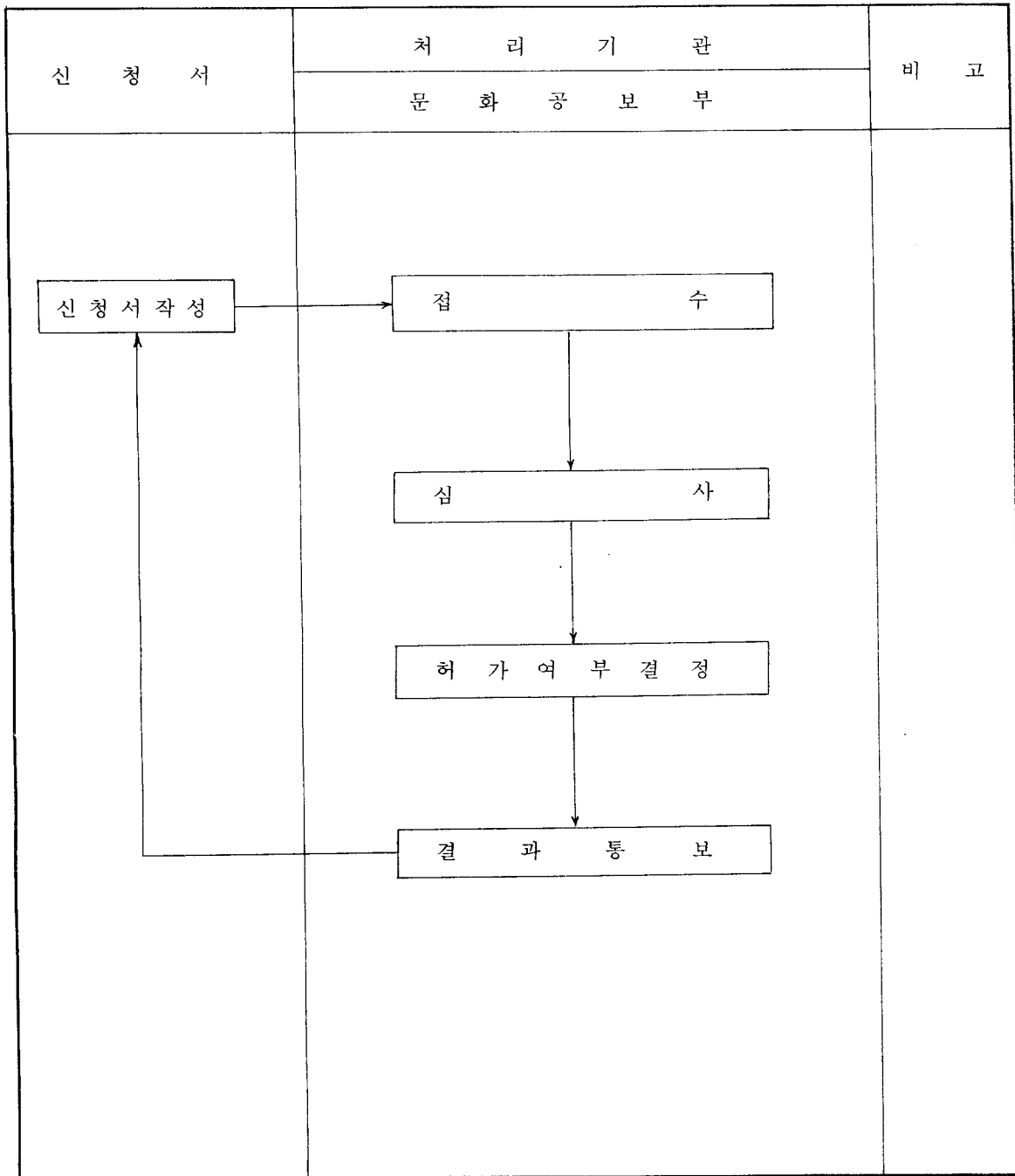
(앞쪽)

35352-00711 민
1987.6.30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 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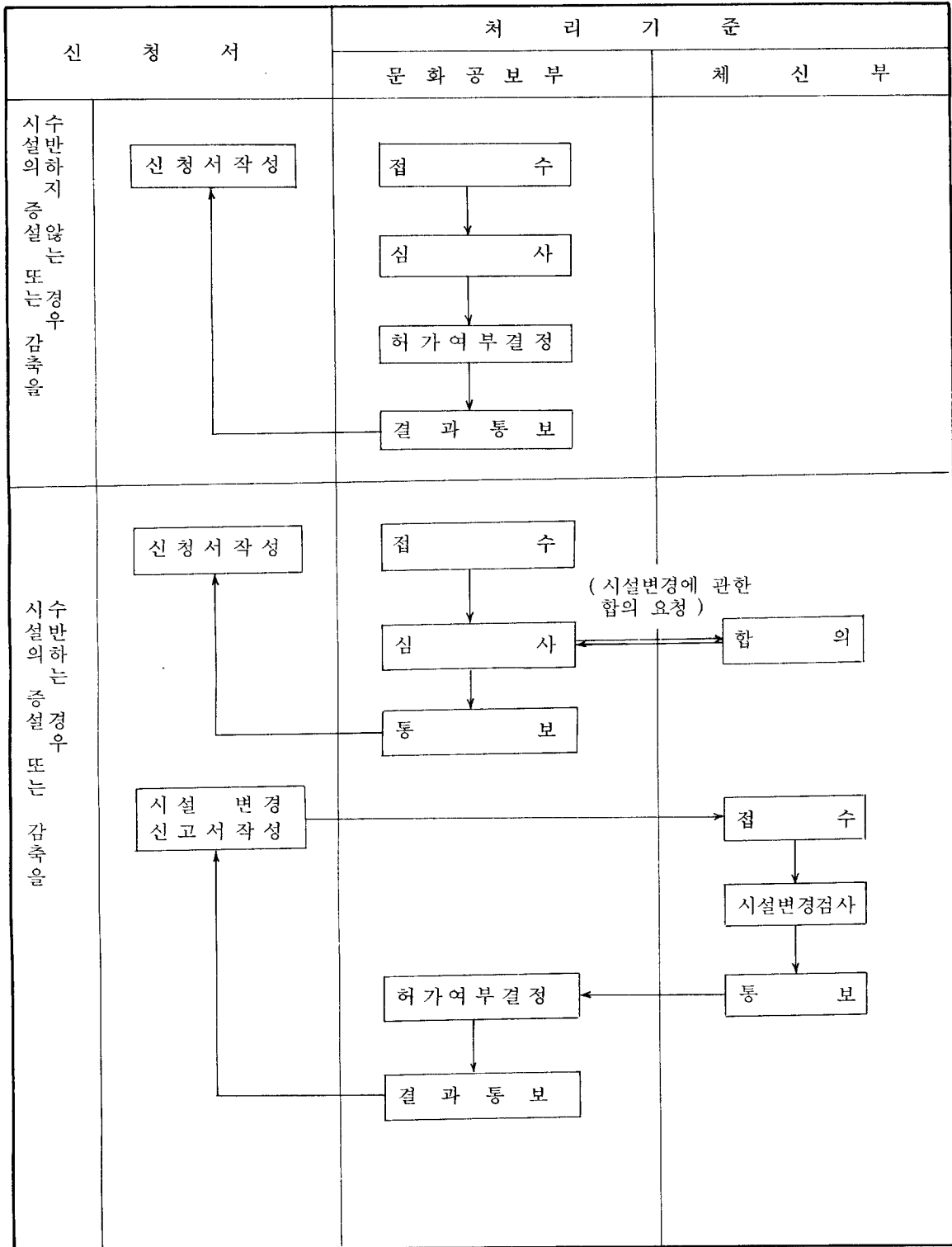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 9 호서식]

유선 방송 사업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전화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허가내용	⑤ 사업의 종류		⑥ 허가번호		⑦ 허가일자	
	⑧ 소재지		⑨ 송신내용		⑩ 사업구역	
변경내용	⑪ 변경사항		⑫ 변경전		⑬ 변경후	
					⑭ 비고	
⑮ 변경사유						
유선방송관리법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문화공보부장관 서울특별시 직할시장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35352-00811 민
1987.6.30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 g/m²)

[별지 제 10 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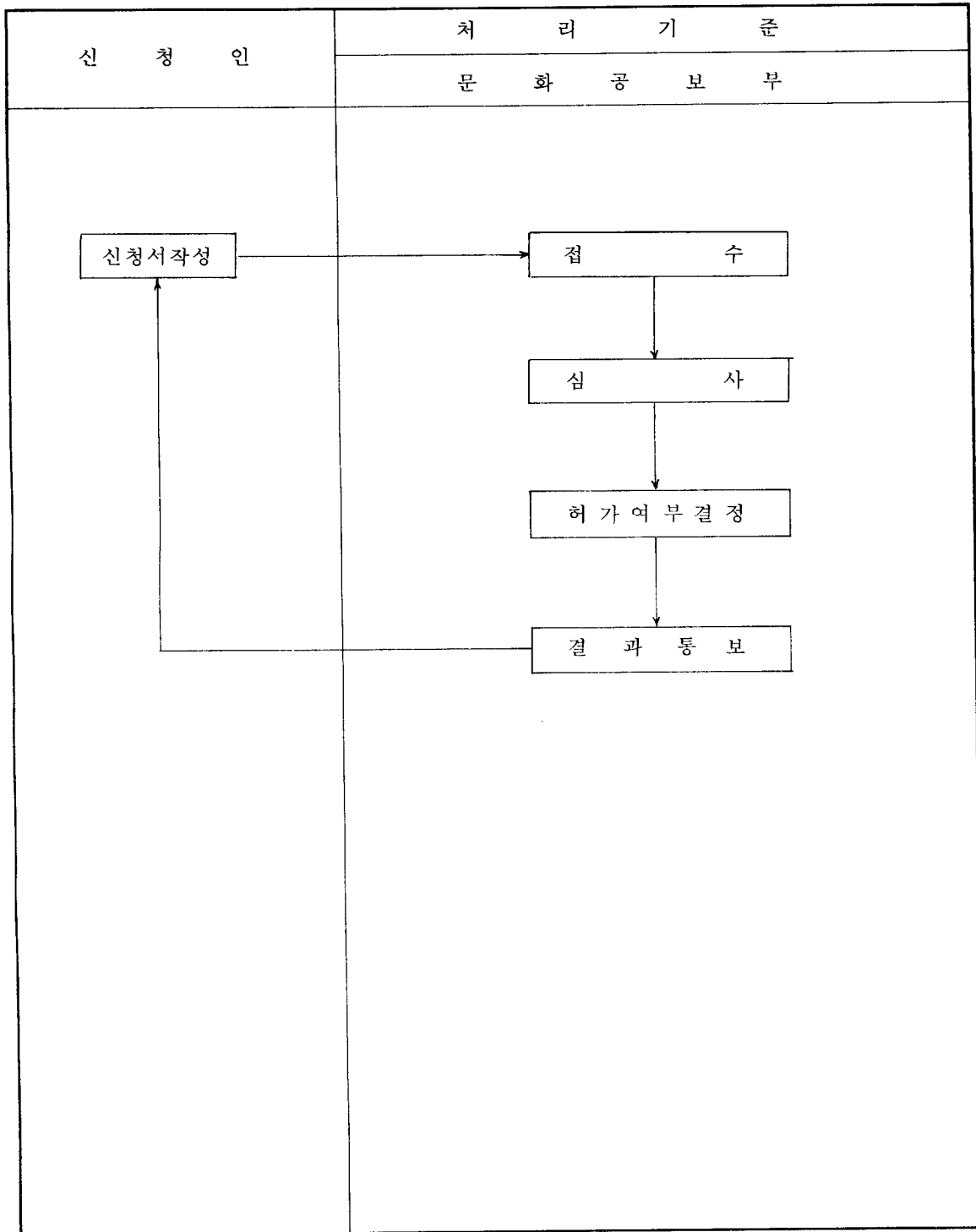
유 선 방 송 사 업 자 지 위 승 계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대 표 상 속 인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⑥ 피상속인과의 관 계		
상 속 대 상	⑥ 사업의 종류		⑦ 허가번호			⑧ 허가일자 . .
	⑦ 상호 (명 칭)		⑩ 송신내용			⑪ 사업구역
	⑫ 소 재 지			⑬ 전 화 번 호		
피 상 속 인	⑭ 성 명			⑮ 주민등록번호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⑱ 사 망 일 자		
공 상 속 인 동 인	⑲ 성 명	⑳ 주 소	㉑ 주민등록번호	㉒ 피상속인과의관계		
㉓ 상속년월일 . . .						
유선방송관리법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문화공보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귀 하 신고인						
첨 부 서 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상속인의 이력서 · 호적등본 및 신원증명서 각 1부 3.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전원이 연서로 선택한 서류 1부 4. 유선방송사업허가장						수수료
						없 음

35352-01011 민
1987.6.30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유선방송사업양도·양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양도자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사 업 개 요	⑤ 상호 (명 칭)		⑥ 사업의 종류	
	⑦ 소 재 지 (주된 사무소)		⑧ 전 화 번 호	
	⑨ 사 업 구 역		⑩ 송 신 내 용	
	⑪ 허 가 번 호		⑫ 허 가 일 자	
양수자	⑬ 성명 (대표자)		⑭ 주민등록번호	
	⑮ 주 소		⑯ 전 화 번 호	
⑰ 양 도 · 양 수 사 유				
⑱ 양도·양수계약년월일		. . .		
유선방송관리법 제 1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선방송사업의 양도·양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문화공보부장관 서울특별시 직할시장 도지사 귀하 ⑲				
첨 부 서 류				수 수 료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부 2. 양수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 의 이력서·호적 등본 및 신원증명서 각 1 부 3. 정관·등기부등본 각 1 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유선방송사업허가장				없 음

35352-01211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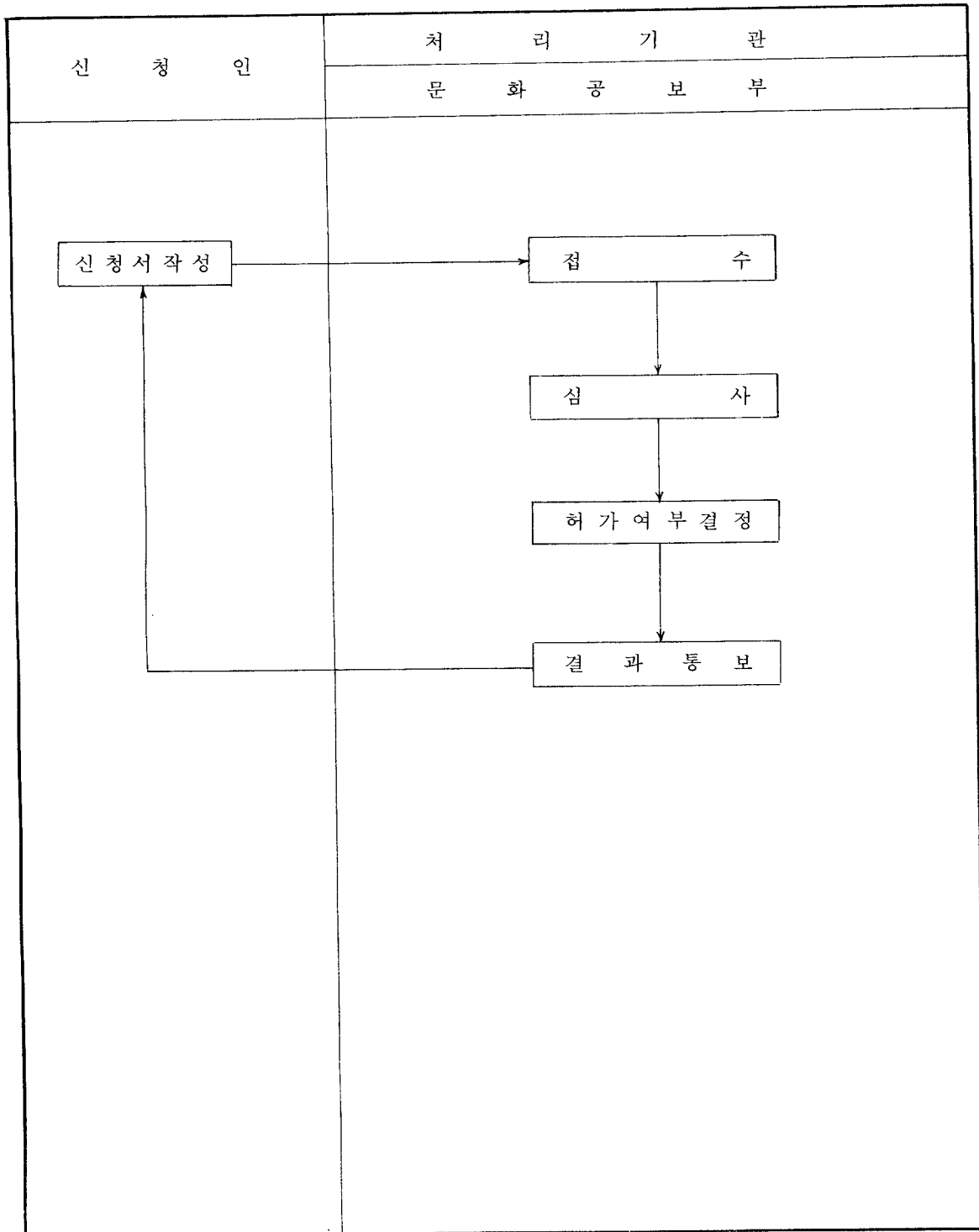
1987.6.30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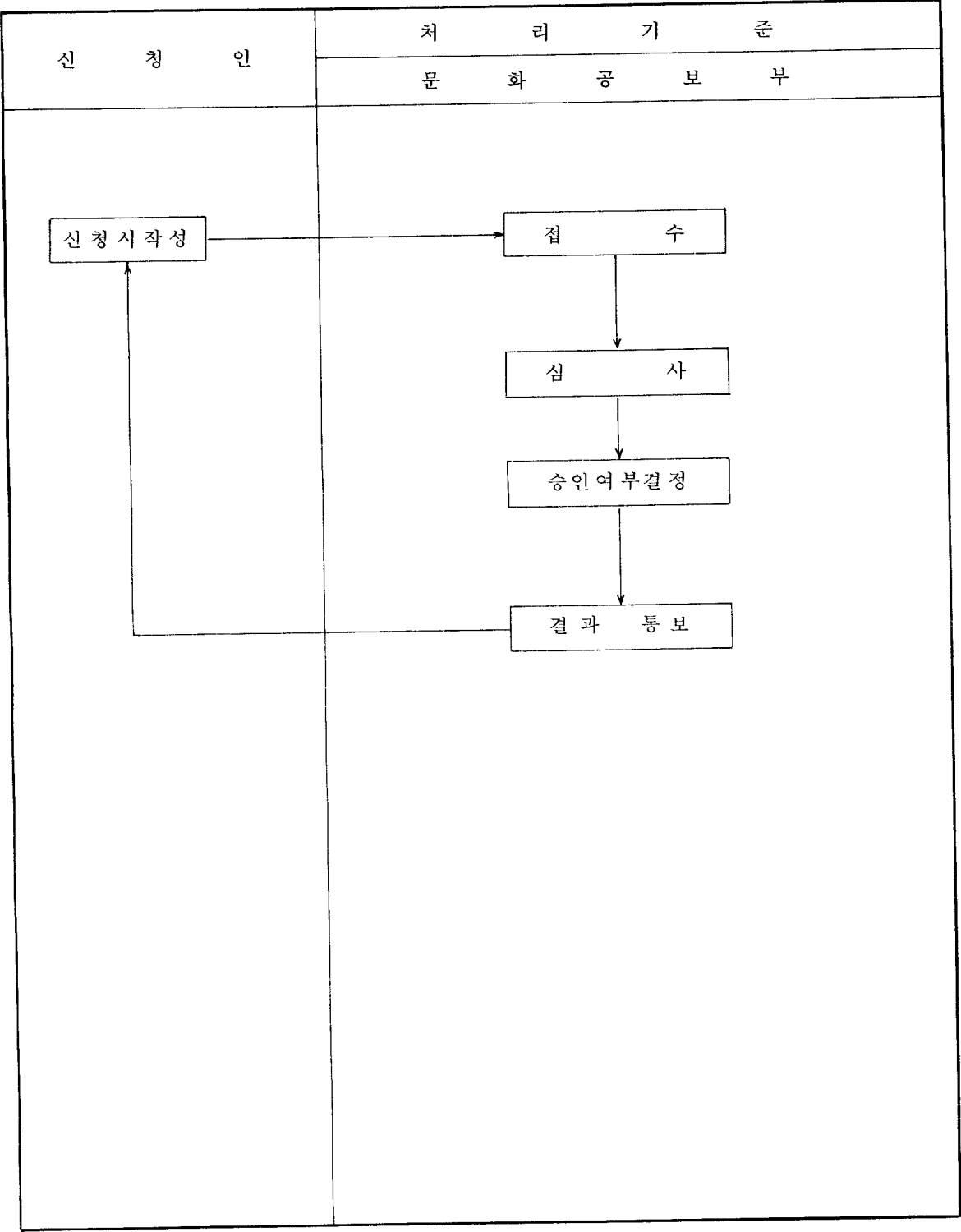
이 용 약 관 승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 상호 (명 칭)				② 전 화 번 호	
	③ 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사 업 개 요	⑤ 사업의 종류		⑥ 허가번호		⑦ 허가일자 . .	
	⑧ 소 재 지 (주된사무소)				⑨ 사 업 개 시 예 정 일	
	⑩ 사 업 구 역				⑪ 가 입 자 수	
약 관 내 용	⑫ 가 입 비		원		⑬ 월 사 용 료	
	⑭ 기타 주요사항					
유선방송관리법 제 1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약관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㉑ 문화공보부장관 서울특별시 직할시장 도지사 귀하						
첨 부 서 류					수 수 료	
					없 음	
1. 이용약관 2 부 2. 사용료산출내역서 1 부						

35352-01311 민
1987.6.30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 14 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

[문화공보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 할 시 장
도 지 사]

발신명의 :

㉔

제 목 : 유선방송사업실시결과보고서

보 고 자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의 종류		④ 전 화 번 호		
	⑤ 허 가 번 호		⑦ 사업구역		
	⑧ 소 재 지 (주된사무소)		⑨ 송 신 내 용		
시 설 의 현 황	⑩ 인 입 단 자 수		⑪ 사 용 중 인 인 입 단 자 수		
			⑫ 접속하는 수신설비등수		
	주 파 수	⑬ 사 용 주 파 수		⑭ 용 모	
	선로 시설	⑮ 간 선		⑯ 분 배 선	
		(중계증폭기 대)			
	⑰ 보 안기	⑱ 인 입 선			
시 설 보 수 상 황	⑲ 고 장 및 파 손 상 태		⑳ 원 인		
			㉑ 조 치 사 항		

35352-01421 보

1987.6.30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g/m²)

자 체 제 작 · 송 신	㉒	프	로	명	㉓	내	용	㉔	송신일자	㉕	비	고		
수 지 현 황	㉖	수				입				㉗	지			출
	가. 사업수익				원	가. 사업	지출				원			
	가 입 비					인 건 비								
	이 용 료					자 재 구입비								
	기 타					시 설 사 용 료								
	나. 사업외 수익				원	제 작 비								
						저 료								
						전 기 료								
						임 차 료								
						제 세 공 과 금								
						감 가 상 각 비								
						기 타								
						나. 사업외 지출				원				
	계				원	계				원				

(3면)

월 일

유 선 방 송 일 지

㉘ 송시시간	㉙ 프 로 명	㉚ 내 용	㉛ 송신채널	㉜ 비 고

35352-01422 보
1987.6.30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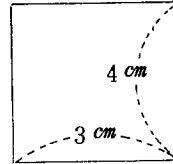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 15 호서식]

(앞쪽)

제 호

검 사 공 무 원 증



소 속
직 급
성 명
유효기간

. . . 부터
. . . 까지

위 공무원은 유선방송관리법 제 1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 시설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유선방송사업에 관
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문화공보부장관
서울특별시
직할시장
도지사]

35352-01511 일

1987.6.30 승인

80 mm × 130 mm

(인쇄용지 (특급) 120 g / m²)

(뒤 쪽)

주 의 사 항

1.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2. 본증은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3. 본증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문화공보부방송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거나 문화
공보부방송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